

연 구 자 료

연구 94-3-20

개발원조와 국가의무

— 원조규모를 중심으로 —

선임연구원 김 채 형

1994. 3

KOICA <<<<<<<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조사국

목 차

I. 서	론	1
II. 개발원조와 OECD		4
1. OECD 가입조건		5
가. 일반적 의무사항		5
나. 권고적 사항		6
다. 자유화 의무사항		7
2. 가입의 긍정적인 측면		8
3. 가입에 따른 부담사항 및 책임		9
III. 개발원조 실시에 대한 국제적 논의		11
1. 일반적 고찰		11
2. OECD의 수용		17
3. 원조규모 목표		20
가. 목표의 확정		20
나. 각국의 반응		25
IV. 개발원조에 관한 국제기구 결의의 평가		29
1. 국제기구 결의의 형성과 기능		32
가. 국제기구 결의의 형성		32
나. 국제기구 결의의 기능		33
2. 국제기구 결의의 가치		34
V. 결	론	37
참 고 문 헌		42

I. 서론

저개발의 상태를 극복하려는 것은 국제공동체가 이 시대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만큼 주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국가와 국제기구가 제공한 여러가지 경제원조 및 개도국 자체에 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국과 부국간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으며 없어지지도 않았다. 몇몇 개도국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이러한 국가는 소수이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 국가는 낮은 경제성장, 저소득,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 영양실조, 경제의 왜곡, 높은 외채, 무역조건의 악화, 낙후된 의료수준, 자연환경의 악화 같은 전형적인 저개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러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어 있다.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경제원조의 제공목적은 이러한 저개발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UN (United Nations)은 점차 세계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구성조직을 확대하여 세계적 보편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으며, UN총회와 그 전문기구는 새로운 국제제도의 변화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기구가 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되었다. 새로운 국제제도는 세계정부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개발과정에 선진국측이 실질적 자원이전을 통하여 참여하게 되는 개발분야에서의 연대적 의무조직을 창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성 개념은 UN의 조직내에서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고 1949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 개시된 마아살플랜에 따라 서구유럽에 대한 미국의 재정자원 이전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마아살플랜은 국가의 재건과 경제개발을 착수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원조원칙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동의 목적추구에서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상호의무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부를 축적한 미국과 피폐하게 된 유럽간에 시작된 이러한 원조는 식민제국주의 시대를 통하여 비참한 상태가 된 저개발국과 선진국간에 세계적 차원으로 실시될 수가 있고 실제 실시되어 온 것이다.

1949년 1월 트루만 대통령은 저개발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미국의 노력을 확대하려는 Point IV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미국과 서구는 선진국측의 저개발국에 대한 재원자원 이전의 필수불가결한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1949년 7월 UN 경제사회이사회는 "기술원조확대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여기서 선진국은 개방된 다자체제의 이행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러한 체제는 수원국에 전문가 파견, 기자재 제공, 교육 및 직업훈련센터 설립에 기반을 두었다.

1960년 UN 총회는 제 1차 개발 10년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는데 여기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처음으로 개발의 공동목적 추구를 위하여 세계적·국가적 차원에서 매년 GNP 5%의 성장에 가능한 빨리 도달하려는 공동목적에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성장 지표에 따라 각국정부가 자국의 성장정책을 수립하고 최소한의 성장율에 도달하기 위해 재정자원 이전을 촉구하는 이념을 확정시켰다. 따라서 세계적 차원에서 개발의 연대정책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은 양자간 및 다자간 방식에 의한 재정 자원 및 기술자원 이전을 장려하는 선진국측의 자발적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국제원조의 분야에 모든 국가에 대해 의무적 성격을 부과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법규칙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제공에 관한 연대성 의무에 대한 규정은 몇몇 국제조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UN 헌장 제 1조, 제 2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협정 제 1조, 제 2조,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설립조약 제 3조, 제 131조, 제 132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UN 헌장 제 1조 3항에서 UN의 목적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성질을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제협력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조 3항에 표명된 UN의 목적은 제 55조와 제 56조에 구체화되어 있다. 제 55조에서는 회원국간의 안정 및 복지의 조건을 이루기 위하여 UN이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및 경제적·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56조에서는 제 55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은 UN과 협력하여 집단적 또는 개별적 행동을 취할 것을 서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2조

에서는 제 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UN의 모든 회원국은 헌장이 부과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 2항), UN이 헌장에 따라서 취하는 여하한 행동에 대하여서라도 UN에 모든 원조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5항)

그리고 1960년 OECD 협정 제 1조 b에 따르면 OECD는 경제개발과정에 있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정책을 증진할 목적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원조체제를 개선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제 2조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개도국인 비회원국에 대하여 기술원조의 제공과 자본이전에 의해 비회원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회원국들이 개별적 및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57년 EEC를 창설하는 로마조약의 제 3조는 유럽경제공동체는 무역을 증진시키고 경제적·사회적 개발노력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 공동체와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개도국인 비유럽국가와 협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31조에서는 이러한 협력은 이러한 비유럽국가 인민을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발전으로 이끌기 위해 이러한 인민들의 이익과 번영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 132조에서는 이러한 협력은 공동체 회원국가가 그들간에 적용되는 특별체제를 이러한 비유럽국가와의 국제무역에 적용시키고 회원국가는 이러한 비유럽국가의 점진적 발전이 요구하는 투자에 기여하는 목적을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원조제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로마조약에 가입한 유럽의 일부 회원국과 이 조약이 규정하는 소수의 개도국간에만 관련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오늘날 모든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원조제공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조제공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도국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지난 30여년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이라는 커다란 목표내에서 원조제공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원조규모와 조건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확립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UN 및 기타 국제기구의

토의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많은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으나 이러한 결의는 그 자체로서 효력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93년~97년)에 의하면 90년대 후반 우리의 GNP 규모나 대외교역규모는 OECD 국가들의 1991년 평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계획기간중 우리의 경제운용방식, 제도 및 관행을 국제규범에 일치되게 개편하여 96년말까지는 OECD에 가입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OECD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OECD 협정 제 1조에 명시된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및 세계 경제발전에 공헌해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원조실시와 자유무역의 확대를 지지해야 하며 OECD가 채택한 제규정을 원칙적으로 수락해야 한다. 게다가 OECD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를 설립하였다. DAC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양적확대 및 질적 개선에 대해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권고를 회원국에 대해 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OECD에 우리나라의 향후 가입이 아국의 원조실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 실시문제에 관한 국제기구의 논의와 채택된 결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결의의 이행문제에 대해 선진각국이 취해온 입장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결의가 국제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질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실제 개발원조 실시가 국가에 대한 강제적 의무가 될 수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개발원조와 OECD

OECD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Marshall 원조계획에 관련된 사항의 처리와 유럽경제의 부흥을 위해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발전된 것이다. OEEC는 유럽경제의 부흥과 발전에 관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후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설립으로

점차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발전적인 해체를 통하여 기존의 회원국에 미국과 캐나다 등이 추가되어 1961년 9월 OECD로 발족되었다. 이 기구의 주요한 목적은 회원국간의 경제성장, 고용안정, 무역자유화 및 개도국에 대한 원조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OECD 가입조건

OECD에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문제는 OECD 협정 제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사회가 회원국의 의무를 수락할 의사가 있는 어떠한 정부에 대해서도 이 협정에 가입토록 초청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국이 수락해야 하는 의무로는 일반적 의무사항, 자유화 의무사항, 권고적 사항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일반적 의무사항

이것은 크게 3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OECD 가입국으로서 OECD의 설립목적을 지지해야 하는데 OECD 협정 제 1조에 규정된 OECD의 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및 세계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며, 세계무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과정에 있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정책을 증진하는 것이다. 특히 제 1조에 규정된 OECD의 목적인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제 2조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OECD 회원국은 개도국인 비회원국에 대한 자본이전에 의해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회원국의 약속을 규정하여 개도국에 대한 원조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OECD의 내부운영절차를 규정한 제반법규를 원칙적으로 수락해야 한다. OECD의 제반법규(Acts of OECD)는 OECD의 제반활동 및 회원국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식은 결정, 결의, 권고, 규정, 규칙, 규약, 커뮤니케 등 다양하다. OECD의 법규는 OECD의 내부절차,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과학기술의 진흥, 이중과세방지, 통계자료의 제출, 무역정책과 원조정책의 조정, 농수산품의

국제규격 그리고 정상무역의 거래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 광범위한 분야를 취급하고 있다. 특히 이중 내부절차에 관한 제반법규의 수락이 곧 일반적 의무사항의 준수를 의미한다.

세째, OECD 예산집행을 위한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OECD의 경비는 일반경비(Part I of Budget : 회원국의 공동목적을 위한 지출)와 일반경비 이외의 지출(Part II of Budget)로 나누어지는데 일반경비에 대한 각국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GNP에 비례된다(89년 OECD의 일반경비는 약 11억 프랑이었다). 이때 어느 회원국도 OECD 예산액의 25% 이상 또는 0.1% 이하를 부담할 수 없으며 매년 0.75% 이상 증감할 수 없다.

나. 권고적 사항

권고적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가입 희망국에게는 가입전에 GATT 11조국 및 IMF 8조국으로 이행할 것이 권고되는데, 한국은 1988년 12월 IMF 8조국으로 이행함으로써 경상지불에 대한 외환제한 철폐, 차별적인 통화조치의 철폐 그리고 외국인 보유원화 잔고의 교환성 부여등의 의무를 수락하였다. 또한 1990년 1월 GATT 11조국으로 이행함에 따라 무역에 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 이외의 쿼터제, 수출입허가제 등과 같은 수출입 제한조치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OECD는 DAC를 중심으로 개도국에 대한 일정수준의 원조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DAC의 활동목표는 개도국에 원조규모를 증대시키고 개별수원국의 필요성에 따라 원조의 조건과 형태를 적합화 시키며 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DAC는 개도국을 원조하고 장기자금의 흐름을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DAC는 DAC 회원국들에게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부담금을 각국 GNP의 0.7%에 도달하도록 목표를 정하였으나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러한 권고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DAC에는 OECD 가입과 관계없이 DAC에 우선 가입할 수 있으며, OECD에 가입 하더라도 DAC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DAC에 가입하려면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¹⁾ 한다. 첫째는 원조수혜국 지위에 있지 않아야 되는데, OECD 일부 회원국은 수혜국인 동시에 공여국 지위에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혜국 리스트에서 삭제되어야 DAC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DAC에 가입하려면 DAC의 원조수혜 리스트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로 ODA 규모에 있어서 최소한 GNP의 0.2% 이상은 되어야 한다. 세째로는 중기계획상 정부지출 예산에서 ODA 비율이 DAC 회원국 평균(0.33%)에 도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다. 자유화 의무사항

OECD의 가장 핵심적이고 엄격한 의무사항인 자유화 의무사항은 경상무역의 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의 준수이다.

① 자유화 규약의 구성 및 목적

OECD의 발족과 더불어 1961년 12월 OECD 이사회는 경상무역의 거래자유화규약 (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과 자본이동자유화규약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을 채택하였으며, 1989년 5월 OECD이사회는 양 규약의 일부개정을 결정하였다. OECD의 자유화규약은 국제경제환경을 보다 자유화시킬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양 규약은 모두 4부 24조의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OECD의 두개의 자유화 규약의 목적은 여러 회원국의 거주자가 다른 회원국의 거주자와 영업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대상 회원국

1) 가입조건에 관한 DAC의 명문상의 규정은 없지만 DAC의 최근까지의 선행등을 감안하여, KOICA 한우석 상임고문의 OECD 방문시 OECD 사무국내 개발협력국 Bartsch 과장이 밝힌 견해이다. 한우석, "프랑스 출장보고서", KOICA, 1993년 10월 참조.

의 거주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데 있다. 여기서 자유화란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에 부수되는 자금의 이전 뿐만 아니라 거래자체의 체결 및 시행에 관련된 규제까지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유화 의무사항은 국제간 자금지불 및 이전에 대한 외환규제로부터의 자유화 차원을 넘어서 계약체결의 자유화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② 자유화규약의 내용

경상무역의 거래자유화 규약은 이전거래는 물론 이전거래의 원인이 되는 거래계약의 자유화 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매우 넓은 범위의 경상계정운영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항목으로는 영업활동 관련거래, 무역관련거래, 운송관련거래, 보험관련거래, 은행 및 은행 서비스 관련거래, 자본소득 관련거래, 여행 및 관광 관련거래, 시청각 관련 서비스 거래, 개인소득 및 지출 관련거래, 공공수입 및 지출관련거래 등으로 되어있다.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은 1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항목은 직접투자, 직접투자의 청산, 부동산 거래, 자본시장에서의 거래, 단기금융시장거래, 매매가능 금융수단 및 증권화 되지않은 권리 등의 거래, 공동투자 증권의 거래, 무역 및 용역 제공 관련신용,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 담보와 보증, 예금제정거래, 외환거래, 생명보험, 개인적 자본이동, 자본의 실물이동, 비거주자 소유 봉쇄자금의 처분으로 되어 있다.

2. 가입의 긍정적인 측면

첫째, OECD 가입은 회원국간의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를 통하여 다른 회원국들이 택하고 있는 경제정책 및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수 있으며, 환경, 원자력, 구조조정 문제등 OECD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은 새로운 대응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OECD 가입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경제정책의 명료성과 일관성을 대외적인 약속사항으로 지킬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국경제정책의 결정 및 운영이 폐쇄성에서 벗어나 공개적이고 합리적이 될 수 있고 경제정책결정이 경제윤리에 보다 충실해질 수 있으며 경제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증대되어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세째, OECD는 GATT, 환경협상등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경제사안에 대해 회원국간 사전검토 및 조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경제현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환경, 경쟁정책 등 새로운 라운드 협상시 중요한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째, 자본·서비스산업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OECD에서 다자간 협의 및 개별회원국과의 활발한 상호의견 교환 및 조정을 통해 한국의 능동적 시장개방추진으로 쌍무적 개방압력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며 국제화, 개방화 문제를 자율적·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다섯째, 단기간에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모범적인 선발개도국으로서 OECD에 가입하여 OECD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국제적으로 대립되는 현안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을 적절히 조정하여 원만한 국제경제질서를 형성할 수 있으며, 양 진영간의 설득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고 이에따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

3. 가입에 따른 부담사항 및 책임

① OECD 두가지 자유화 규약에 따른 문제

OECD에 가입할 경우 자유화 의무사항인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 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을 준수해야 하므로 운송, 은행, 보험 등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경상무역외의 거래자유화 규약)가 필요하며, 직접투자, 증권발행 및 매매, 단기자본거래 등 국제간 자본이동의 자유화(자본이동 자유화규약)가 필요하므로 한국경제의 경제정책 운용중 자유화 추진속도에 있어 자율성을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 자유화규약의 수락문제는 OECD 가입에 있어서 한국경제에 어느정도 부담이 될 것이나, 자본시장 및 서비스산업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 부터의 시장개방 압력의 주요 표적이 되고있고 이미 우루구아이 라운드 다자간 협상이나 한 미등 양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해 수용한 상황이므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한국은 개방을 유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화규약 수락시 유보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유보항목의 합리적 선정과 이를 OECD 회원국에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관철시킬 경우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방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제무대에서 개도국지위 원용 관련 문제점

OECD는 설립과정에서의 회원국간 개발정도의 사실상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설립협정과 "경상무역의 거래자유화 규약"과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서 명백히 인정하고 있어 특정국가의 OECD에의 가입이 당연히 선진국으로서의 승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국제무대에서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OECD내에서 실질적인 문제 및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 그들의 입장차이를 줄이며, 77그룹에 대한 선진국들의 정책을 조정하고, OECD 본부에서 일반행동 지침을 결정하므로, OECD가 경제적 선진국으로만 구성된 기구는 아닐지라도 국제질서의 개혁을 요구하는 77그룹에 대응하는 기존 국제질서의 옹호국들의 그룹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OECD에 가입은 향후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77그룹과의 관계문제를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협상, GSP 수혜문제 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원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OECD 가입과 관계없이 우리의 경제 규모가 신장되고 선진화되어 가면 갈수록 개도국 지위는 원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OECD는 기본적으로 선진국 중심의 기구이나 개도국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OECD 가입과 동시에 개도국 지위의 원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환경협상에 있어서는 OECD 회원국이 기본적으로 선진국으로 간주되어 자금공여 및 기술이전 등의 부담을 지지만 몬트리올의정서 등은 CFC(Chlorofluorocarbon)의 사용실적에 따라 선진국·개도국을 구분하고 있어 구체적 협약별로는 개도국 지위를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GSP 수혜문제에 있어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OECD 회원국으로서 수혜를 받고 있어 당분간은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ODA 실시문제

OECD 가입시 신규회원국은 권고적 의무사항인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성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DAC에서 권고하는 목표인 ODA/GNP 비율인 0.7%를 공여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그러나 OECD 회원국으로서 ODA 수준이 현저히 낮을 때는 회원국들의 비판적 시각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OECD 가입시 ODA / GNP 비율을 사실상 일정수준으로 제고시켜야 한다는 유무형의 압박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후발 OECD 가입 4개국(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의 가입당시 ODA / GNP 비율(평균 0.26%)을 감안할 때 ODA 수준의 제고(한국은 1991년 현재 0.04% 수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조의 증액으로 인한 정부지출 증대등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Ⅲ. 개발원조 실시에 관한 국제적 논의

1. 일반적 고찰

1945년이후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이 국제경제협상에서 많이 논의되었으며 이런 방안 중에 개도국의 개발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 선진국의 재정원조가 가장 주요한 요소로서 나타났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UN에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제 3세계 국가가 많이 가입함에 따라 UN 총회에서는 이들 국가가 다수를 점하였고 1960년부터 식민지상태를 탈피하려는 문제가 UN에서 주요한 의제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개발이념과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제3세계 국가로서는 식민지 탈피와 개발을 동일한 개념으로서 인식하였다. 이 이후 제3세계 국가는 식민지 탈피에는 협력이 필요하고 개발은 식민지 탈피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국제공동체 회원국가에게 받아 들이게 하였다.

따라서 1960년부터 UN은 개발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에서 UN 총회는 1961년 12월 19일 결의 1710(XVI)을 채택하여 1961~1970년을 저개발국에 사는 인민들을 위해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협조하는 시기로서 UN의 제 1차 개발 10년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 결의는 제3세계 개발을 위해 세계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세계적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다. UN 개발 10년의 전략적 목표는 1960년대의 개도국의 경제성장 목표를 년 5%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선진국이 국민 소득의 1%를 원조로서 공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이후 국가간의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협력노력이 차츰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1964년 개최된 제 1차 UNCTAD 회의는 개발과정에서 국내자원과 국외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국외자원은 국내자원을 단지 보완하는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또한 UNCTAD 회의는 개도국 자체가 개발을 담당할 임무가 있으며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사회적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기초자원을 동원하고 개발과정에 자국의 국민을 참여시키는데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말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국외자원이 개발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개도국의 투자와 생산 가능성을 보완해 주며 외국기술의 접근에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표명하였다. 개발을 위한 금융은 제공조건과 방식에 따라 투자와 사적차관, 공적개발원조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금융제공은 개도국의 성장을 가속화 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데 그 중 개발원조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제 1차 UNCTAD 회의는 선진국은 개도국²⁾에게 선진국 국민소득의 1%에 해당하는 재정자원을 이전하도록 하고 이 목표가 개별³⁾ 국가 기준으로 도달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1966년 9월 17일 개최된 UNCTAD 이사회는 Resolution 30을 채택하여 1% 목표에 도달하고 증가하도록 하는 원조노력의 필요성을 재확인 하였다.

1970년 10월 24일 UN 총회는 제 2차 UN 개발 10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것을 위한 국제개발전략을 Resolution 2626(XV)으로 채택하였다. 제 2차 개발 10년은 그 당시 4가지 주요한 국제회의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기초가 만들어졌다.

첫째는 1967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 2차 UNCTAD 회의에서 나온 Raul Prebisch의 제 2차 보고서(Toward a Global Strategy of Development)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UNCTAD 사무총장인 Prebisch의 보고서에서는 세계개발의 이념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 이념은 오늘날 개발이념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개발전략은 UNCTAD에서 시작된 토의와 협의 및 오랜 협상의 산물이다.

Prebisch에 의해 표명된 세계적 개발전략의 이념은 기본적인 세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①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행동(이 행동은 국제연대성과 상호의존원칙의 이행을 뜻하는 것이다.) ②제3세계 개발을 위한 세계적 전략에 집중적인 조치의 채택(이것은 일정한 경제성장율에 도달하기 위해 외국의 재정자원과 국가의 국내투자자원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③국제적·국가적 경제개발계획화의 이념(이러한 계획화는 우선 개도국의 국가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다음에 국제적 협력노력을 계획화하는

2) 선진국 국민소득 1% 원조목표는 1958년 국제적 NGO인 World Council of Churches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목표는 1960년 12월 15일 개도국에 대한 자본과 기술원조 흐름의 가속화에 관한 UN 총회 Resolution 1522(XV)에서 재확인 되었으며, 이 결의는 가능한 빨리 선진국 국민소득의 1%에 도달하도록 표명하고 있다.

3) UNCTAD 회의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경제적으로 진보한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가능한 빨리 선진국 국민소득의 최소한 1%에 해당하는 재정자원을 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순수한 자본수입국인 특정국가의 특별한 입장을 고려한다."

것이다.) Prebisch 보고서에 나타난 이러한 이념은 세계개발전략의 의미와 내용의 정의에 관한 근본적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뉴델리의 UNCTAD 회의는 UN에서의 국제개발전략의 실질적 내용형성에 관해 어떠한 긍정적 결과를 낳지 못했다. 그렇지만 UN의 제 2차 개발 10년에 UNCTAD는 두가지 점에 이바지 하였다. 첫째, 제 1차 개발 10년은 개발정책 없는 개발 10년이었던 사실은 지적한 것이고,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 및 집중적 행동을 포함하는 국제개발전략의 긴급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두번째 주요한 국제회의 보고서로는 1969년 9월 World Bank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⁴⁾ Pearson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는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역사를 개관하고 장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개발문제와 국제원조방식, 무역정책, 외국사적투자, 인구, 교육, 개도국의 부채문제에 관해 선진국과 개도국에 68개의 권고를 하고 있다.

세번째 보고서로는 UNDP 요청에 의해 1969년 12월 작성된 Jackson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 명칭은 "개발을 위한 UN 체제의 권한에 관한 연구"이다. 이 보고서는 개도국에서 기술원조 활동을 하는 UN 전문기구의 권한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개발에 대한 다자원조가 UN 및 그 전문기구의 종합적 전략에서 나와야 하며, 이에 따라 다자원조에 관련된 각 기관간의 협조와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번째 보고서로는 Tinbergen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는 UN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⁴⁾의 요청에 의해 경제사회이사회의 개발계획위원회 의장인 Tinbergen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제 2차 개발 10년에 관한 기초를 제공하였는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개발의 근본적 목적과 우선권 심사 ②국가적 차원에서 취할 방법과 조치 ③국제무역과 재정적·기술적 원조분야에서 국제적 차원의 방법과 조치로 되어있다. 재정적 원조에 대하여 이 보고서는 선진국에 많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재정적 원조규모에 대해 이 위원회는 Pearson 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4) 본 논문 pp.22-23 참조

나타내고 있다. 즉 선진국 GNP의 1%에 해당되는 재정자원 이전목표를 1972년까지 실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1% 목표와 그 기간내에서 선진국은 최소한 GNP의 0.75%를 ODA 형태로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다량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석유수출국은 개도국에 재정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Tinbergen 위원회의 이런 권고는 제 2차 개발 10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에서 채택되지는 않았다.

국제개발전략의 채택을 위한 UN 총회의 회의 당시 사회주의국가는 실제 연대성 원칙의 적용을 거부했는데, 연대성 원칙에 따르면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원조에 그들의 국민소득의 일정비율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선진국이 부담하는 이런 의무는 개도국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선진국으로부터 입은 피해 및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을 착취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입은 실질적 손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식민지적 및 자본주의적 착취에 참여하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는 이러한 의무를 당연히 받아 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여러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1970년 UN 총회는 제 2차 UN 개발 10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을 채택하였는데 이 전략에서는 경제성장 목표를 과거 10년전 채택된 제 1차 개발 10년에서 채택된 목표보다 1% 높은 6%로 함으로서 의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①1차산품에 대한 상품협정의 체결추진 ②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개방 ③일반관세관세제도의 조기실시 ④개도국에 대한 재정자원 이전목표는 선진국 GNP의 1%, 이중 ODA는 GNP의 0.7%라는 원조목표의 설정 및 원조조건의 완화 등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선진국이 재정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재정협력 제도의 중심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UN 총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많은 결의를 채택하였고 UNCTAD나 77그룹의 비동맹회의도 이에 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루어 나갔다.

1974년 UN 총회에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개도국측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이 선언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었으나, 개도국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에 대하여 요구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1974년 5월 1일 UN 총회 Resolution 3201(S-VI)로 채택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 제 4절 0항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이 개도국에 대한 재정자원 이전의 우호적 조건을 조성하는 원칙의 준수에서 기초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선언과 함께 채택된 Resolution 3202(S-VI)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행동프로그램인데 제 2절 제 2조에서는 개도국의 개발을 재정지원하고 이러한 국가의 국제수지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조치중의 하나로서 선진국은 제 2차 UN 개발 10년의 국제개발전략에서 확정된 개도국에 대한 재정자원 이전에 관한 프로그램의 이행을 가속화 하여야 하고, 개도국에 이전된 재정자원의 총액중 공적원조의 비율이 국제개발전략에 규정된 목표에 도달하고 능가하도록 증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74년 12월 12일 UN 총회에서 Resolution 3281(XXIX)로 채택된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헌장" 제 22조 제 1항과 제 2항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개도국의 개발의 필요성과 목표에 부응해야 하여 이렇게 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해 공적재정 자원 이전총액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975년 9월 16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개발과 협력"에 관한 Resolution 3362 (XVIII) 제 2절 제 1조에서도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우호적 조건에서 제공되는 선진국의 재정자원 제공이 예측가능하고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증가되어야 하고, 그 제공조건을 개선하여야 된다고 표명하고 있다.

UNCTAD 회의는 1964년 제 1차 회의때부터 개도국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선진국 국민소득의 최소한 1%를 개도국에 이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제 2차 회의에서 채택된 Resolution 27(II)은 다시 한번 선진국이 시장가격에서 GNP의 최소 1% 재정자원

이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 3차 UNCTAD 회의는 1972년 5월 Resolution 61(III)을 채택하여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시장가격에서 GNP의 1%에 해당하는 재정자원을 이전할 것을 요청하면서, 아직까지 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국가는 1975년까지 이 목표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ODA가 GNP의 0.7%에 도달하도록 결의하였다. 1976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 4차 회의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자원 이전이 많이 증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졌으나 선진국은 이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여러가지 제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9년 제 5차 회의 역시 개도국에 대한 원조문제에 대해 어떤 뚜렷한 진전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채택된 Resolution 129(V)는 선진국측의 GNP 0.7% 목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원조를 증가시킬 방법으로서 최소한의 프로그램 설정, GNP의 일정비율을 할당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원조를 증가시킨다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

77그룹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왔는데 1976년 1월 26일 ~ 2월 7일 개최된 77그룹 제 3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마닐라 선언과 행동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다. 즉 제 2부 행동프로그램의 제 4절 제 7조는 개도국에 제공되는 재정자원을 우호적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이전의 조건과 방식을 개선시키고 개도국이 경제적·사회적 개발의 장기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예측가능하고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8조에서는 모든 선진국이 가능한 빨리 늦어도 1980년까지 ODA를 GNP 0.7%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증가시켜야 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2. OECD의 수용

OECD 협정 제 1조와 제 2조에 따르면 OECD의 활동목적중의 하나가 개도국에 대한 원조체제를 개선시키는 것이며 개도국에 대한 자본이전을 통해 OECD 회원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OECD 설립을 준비한 각료회의 역시 1960년 Resolution을 채택하여 개도국에 대한 원조가 OECD의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무를 전담할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DAC의 권한에 대해서는 OECD 설립을 담당한 준비위원회 Report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DAC는 경제개발과정에 있는 국가와 지역을 원조하고 장기자금의 흐름과 다른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DAC의 활동방식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번째는 기본적인 사실확인 작업을 하는데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원조 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적자금의 제공조건을 조절하며 개도국의 부채상환 및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 두번째는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특정문제를 토의하여 공동의 원조정책과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서 이러한 공동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권고(Recommandation)를 채택하여 각 회원국의 원조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마련한다.

개도국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전체규모 확대에 관해서는 DAC의 모태인 DAC가 1961년 런던에서 채택한 "원조의 공동노력에 관한 결의(Resolution on the Common Aid Effort)"에 나타나 있다. 이 결의는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규모를 증대시키고 개별수원국의 필요성에 따라 원조의 규모와 형태를 적합화시키고, 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즉 이 결의는 개발원조를 확고하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DAC의 회원국은 이러한 결의를 계속해서 지지하여 왔으며, 1965년 7월에는 제 58차 DAC 회의를 개최하여 "원조와 개발노력에 관한 권고(Recommandation on Assistance and Development Efforts)"를 채택하였다. 이 권고에서 DAC는 1964년 제 1차 UNCTAD 회의가 채택한 "Growth and Aid"에 관한 권고(Recommandation)을 고려하여, DAC 회원국 정부가 UNCTAD 권고가 규정한 바와 같이 선진국 국민소득 1%에 해당하는 재정자원을 개도국에 이전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능가하도록 하는 정책을 이행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적·사적원조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DAC 회원국은 원조규모 증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1% 기준은 원조규모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목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DAC 회원국은 이 권고를 예외없이 찬성하였다. 따라서 1965년 7월 DAC가 채택한 새로운 권고는 제 1차 UNCTAD 회의의 권고에서 나온 1% 목표의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DAC는 선진국 국민소득 1%에 해당하는 재정자원을 개도국에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로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권고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OECD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채택하는 규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 협정 제 5조와 절차규칙 제 19조에 따라 OECD가 채택하는 규칙은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①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강제력을 가지는 결정, ② 회원국·비회원국·국제기구와의 협정을 승인하는 결정, ③ 비회원국과 국제기구에 의사표명을 하는 결정 ④ 회원국에 제시해야 하는 권고로 나누어 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네번째 경우인 권고인 것이다.

OECD 절차 규칙 제 19조 b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OECD가 채택하는 권고를 고려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규칙 제 20조 a항에 따르면 권고가 특정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권고가 적용되지 않는 회원국을 지적하여야 하며 만일의 경우 이러한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지적해야 한다. 제 21조 a항에 따르면 권고 채택시 한 회원국이 불참하거나 그 입장을 유보할 경우 다른 회원국들은 이러한 권고를 문제된 회원국이 받아들일 때까지 그들 간에만 잠정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합의할 수 있으며, 제 21조 b항에 따르면 권고 채택시 어떤 회원국이 불참했다고 해서 채택된 권고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해 보면 1965년 DAC가 채택한 권고는 DAC의 회원국이 예외없이 찬성을 하였기 때문에 DAC의 모든 회원국은 이 권고를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는 강제적 성격이 없으며

회원국의 유일한 의무는 채택된 권고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OECD 관행에 따르면 권고의 중요성은 위에서 언급한 규정이 지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권고를 적용할 조치를 취하지 않을 회원국가는 권고 채택시 실제 기권을 자주 활용한다. 그러나 DAC가 채택한 권고에는 어떠한 국가도 기권을 하지 않았으며 권고 채택시 불참하거나 자국의 입장을 유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DAC의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권고에 정치적·도의적으로 상당히 구속될 수가 있다.

1970년 9월 Tokyo에서 개최된 DAC 고위급회의에서 DAC 의장인 Edwin Martin은 여러 국제회의의 결의를 고려하여 선진국이 개도국에 선진국 GNP의 1%를 원조로 제공하고 그중 ODA가 1975년까지 GNP의 0.7%에 도달하도록 제안하였는데, 회의종료시 채택된 선언문에서는 UN의 제 2차 개발 10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DAC 회원국은 개도국에 대한 공적·사적 원조규모를 증가시키고 특히 공적원조 분야에서 회원국의 노력을 증가시킬 필요성을 인식한다고만 표명하였다.

이 이후 DAC 회의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제공 규모에 대한 어떠한 권고도 채택하지 않았으며, 개도국에 대한 원조제공에 있어서 금융조건 완화, 원조의 효율적 실시 문제, 공여국간의 원조조정 같은 원조의 질적 개선 문제만을 다루어 왔다. 다만 DAC는 원조규모 확대에 관한 회원국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 원조제공 규모확대에 대한 DAC 회원국의 입장은 UN과 UNCTAD 및 그밖의 국제회의에서 개별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3. 원조규모 목표

가. 목표의 확정

1) 재정자원 이전규모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선진국 GNP의 1%에 해당하는 재정자원을 이전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58년 World Council of Churches 회의에서 하나의 선언이 채택되었는데, 이 선언은 모든 UN 회원국 대표에게 배포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선진국 국민소득의 1%를 무상원조(grants)나 양도성 차관(Concessional loans)으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960년 12월 15일 UN 총회도 이와같은 취지의 Resolution 1522(XV)를 채택하였는데, 이 Resolution은 가능한 한 빨리 선진국 국민소득 전체의 1%에 도달하도록 표명하고 있다. 1964년 제 1차 UNCTAD 회의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지지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이 목표가 개별선진국 기준으로 도달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즉 "경제적으로 진보한 각 국가는 개도국에게 가능한 빨리 선진국 국민소득의 최소한 1%에 해당하는 재정자원을 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순수한 자본수입국인 특정국가의 특별한 입장을 고려한다"라고 표명하였다. 이러한 UNCTAD 회의의 권고를 1965년 7월 DAC는 받아들여 선진국 국민소득 1%에 상당하는 재정자원을 개도국에 이전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능가하도록 하는 정책을 이행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1966년 9월 17일 개최된 UNCTAD 이사회는 Resolution 30을 채택하여 1% 비율에 도달하고 능가하도록 하는 원조노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1968년 제 2차 UNCTAD 회의에서는 새로운 결의가 채택되었는데 시장가격에서 GNP의 1%를 이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원조액을 선진국 국민소득 1%에서 GNP 1%로 바꾼것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하여 이 회의에서 양보한 것이다. 실제 GNP 1%는 국민소득 1%에 비해 25%나 증가된 총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1% 목표는 엄격히 말해서 원조규모의 목표는 아니다. 이것은 상업적 거래와 양허성 원조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또한 1% 목표는 사적자본을 대규모로 해외에 투자하는 국가가 이러한 전체적 흐름이 GNP 1%를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로 자본흐름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 목표의 목적은 하한선을 확립한 것인지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

1972년에 채택된 제 2차 UN 개발 10년의 국제개발전략(International Development Strategy)은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시한을 추가하였다. 즉 "1972년까지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선진국은 늦어도 1975년까지는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1972년 제 3차 UNCTAD 회의에서 채택된 Resolution 61(III)에서 되풀이되었다. 그런데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전체 재정자원 이전을 위한 1% 목표는 1980년대에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으며, 국제적 논의는 주로 ODA를 위한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 ODA 규모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자원의 이전에서 공적원조는 그중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선진국의 사적자본의 기여도 중요하지만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 제도적 구축, 하부구조 강화 같은 개발분야에서 공적원조도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저개발국의 상환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호혜적 조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공적원조의 제공이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전체 재정자원 이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ODA에 대한 추가적 목표의 채택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왔다.

공적원조의 흐름을 위한 별도의 목표를 채택하려는 노력은 개도국들이 제2차 UNCTAD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소집한 1967년 Algiers 회의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 회의에서 77그룹에 의해 채택된 Algiers 헌장은 1% 목표내에서 공적원조의 흐름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 비율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매년 1% 재정자원 이전에서 부족한 부분은 공적자원의 이전에 의해 추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제 2차 UNCTAD 회의는 공적원조의 흐름을 위한 별도의 목표설정에는 실패하였지만 1% 목표를 설정한 Resolution 27(II)은 개도국에 이전되는 재정자원 전체의 많은 부분이 공적원조로 이루어 지도록 공여국이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ODA를 위한 별도의 목표는 1969년 Pearson Commission의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1960년대 발표된 국제개발에 대한 연구중에서 World Bank의 재정지원을 받은 Pearson 보고서가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 1969년 9월 Pearson 보고서가 발표되었을때

대부분의 국가가 제 2차 UN 개발 10년의 행동계획으로 이 보고서를 지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권고(Recommendations)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명한 회원들의 권위 덕택에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이 위원회는 국제기구, 국가 및 세계여론의 주의를 끌었다. Pearson Commission의 많은 권고 중에서 5가지는 DAC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 5가지는 원조규모의 목표, 원조조건, 원조의 점진적 무조건부 제공, 수출금융, 원조효율성을 위한 행정적 장애에 관한 것이다.

Pearson Commission은 개도국에 대한 선진공여국의 전체 재정자원 이전을 위한 목표로서 각 선진공여국이 가능한 빨리 늦어도 1975년까지 GNP의 1%에 도달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이 Commission은 공적자금을 위한 특별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GNP 1% 목표내에서 다른 원조형태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도달가능하고 적절한 공적원조의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각 원조공여국이 1975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1980년 이전에 GNP의 0.7%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ODA 공여를 증가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ODA 목표가 사적자본의 흐름확대에 어떠한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DAC의 모든 회원국은 0.7% 목표에 도달할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World Bank 의장은 1971년 World Bank 이사회에서 이 계획에 대한 토의를 해야하며 각국의 계획은 향후 공표를 위해 1971년 1월 1일까지 DAC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Pearson Commission은 ODA를 위한 별도 목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DAC에 의해 발전되고 1969년 2월 DAC의 금융조건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Financial
5)
Terms and Conditions)에서 새롭게 정의한 엄격한 ODA 개념을 활용하였다. Pearson Commission의 보고서는 제 2차 UN 개발 10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International

5) 1969년 2월 DAC는 1965년에 채택된 "금융조건에 관한 권고"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권고를 채택하였는데, 과거에는 양허성 조건 및 상업적 조건에서의 장기적인 자금의 공적제공이 모두 ODA에 포함되었으나 1969년 새로운 권고 채택으로 개발을 증진하는 양허성 자금의 이전만이 ODA에 포함되게 되었다. 비양허성 자금의 이전은 OOF(Other Official Flows)로 분류되어 ODA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Development Strategy)을 채택하는 회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 UN 총회에서 국제개발전략이 채택될시 77그룹의 Algiers 회의 이후 시작된 공적원조의 별도목표 수립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개발전략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ODA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개도국에 대한 재정자원 이전의 많은 부분이 ODA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각 경제적 선진국은 개도국에 제공하는 ODA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고 70년대 중반까지 시장가격에서 최소한 GNP의 0.7%에 도달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공적원조에 대한 목표는 GNP 0.7%로 확정되었고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시한이 70년대 중반으로 확정되었다.

1970년 국제개발전략 채택시 12개 선진국이 ODA 0.7% 목표에 대하여 몇가지 유보를 표명하였지만 이 목표는 그 이후 점차 많은 국가들이 받아 들였다. 1980년 8월 뉴욕에서 개최된 UN 총회 특별회기에서 국제개발전략에 관한 작업반은 ODA 문제에 대하여 상이한 의견을 많이 나타내었다. 여기서 77그룹은 모든 선진공여국이 1984년까지 GNP의 0.7%에 도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1990년까지는 1.0%에 도달하도록 희망하였다. 결국 1980년 12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제 3차 UN 개발 10년의 국제개발전략은 GNP 0.7%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시한을 확정하였으며, 추가로 1% 목표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 전략의 제 2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선진국 GNP의 0.7% 목표에 도달하고 능가하기 위해 모든 선진국은 ODA를 급격히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현재까지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선진국은 1985년까지 늦어도 80년대 후반까지 도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 이후 1% 목표는 가능한 빨리 도달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도국은 다른 개도국에게 원조제공을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UN 총회에서 공식채택될 당시 DAC의 몇몇 국가가 유보를 하였다. 실제 미국은 0.7% 목표를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프랑스는 1% 목표설정이

자국의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로 고려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동구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목표는 자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1980년 이후 부터는 최빈국 원조를 위한 별도의 목표가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제 3차 UN 개발 10년의 국제개발전략은 제 146항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80년대 동안 최빈국에 대한 ODA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선진국은 특별한 고려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ODA를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최빈국에 80년대 전반기까지 ODA를 최소한 GNP의 0.15%를 제공하고 후반기에는 0.20%까지 증가시키도록 하는 고위 전문가그룹(Group of High Level Experts)의 제안은 1981년 최빈국에 대한 UN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적절히 고려될 것이다."

1981년 Paris에서 개최된 최빈국에 대한 UN 회의는 "최빈국을 위한 80년대의 실제적인 새로운 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제 3차 UN 개발 10년의 국제개발전략에 나타난 규정을 재확인하고 발전시켜 선진공여국측의 엄숙한 약속을 내포하고 있다. 즉, "모든 공여국은 제 3차 UN 개발 10년의 국제개발전략 제 24항 규정에 따라 ODA를 위한 GNP 0.7% 목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 한다. ODA가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서 ODA 흐름은 점차 최빈국으로 흘러갈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과 결부하여 대다수 ODA 공여국은 장차 최빈국에 ODA를 GNP의 0.15%를 제공할 것이다. 기타 국가는 같은 기간에 최빈국에 대한 자국의 ODA를 두배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최빈국에 대한 지난 5년간 ODA 제공과 비교하여 1985년까지 두배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각국의 반응

1964년 제 1차 UNCTAD 회의는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선진국 국민소득 기준으로 1%에 해당되는 재정자원을 이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1968년 제 2차 UNCTAD 회의는

선진국 GNP 기준으로 1% 재정자원 이전을 주장하였다. 원조규모 목표로서 선진국 GNP 1%는 제 2차 UNCTAD 회의이후 DAC 회원국들이 보증한 것이다. 실제 1967년부터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북구국가와 영국이 원조확대 노력을 위한 다년간 계획을 채택하였다. 1970년 UN 총회는 제 2차 개발 10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을 채택하였는데, 이 전략은 선진국이 매년 개도국에 선진국 GNP의 1%에 해당하는 재정자원을 이전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1969년 DAC에 의한 엄격한 ODA 정의에 따라 재정자원 이전에서 ODA로의 제공이 선진국 GNP의 0.7%에 도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1972년 늦어도 1975년까지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개발전략의 채택에 있어서 DAC의 대부분 회원국은 GNP 1%의 재정자원 이전 목표를 받아 들였다. 그렇지만 어떤 국가는 국제개발전략에 나타난 연도(1972년 및 1975년)를 받아 들였고, 어떤 국가는 다른 연도를 표명하였으며, 몇몇 국가는 가능한 한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언을 하는데 그쳤다.

목표의 실현연도로서 1972년을 받아 들인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이다. 노르웨이는 1974년을 표명하였고 일본과 영국은 1975년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몇몇 국가는 구체적 연도의 제시없이 이러한 목표에 서명하였는데, 이러한 국가는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이태리, 스위스이다. 미국은 원조규모에서 1% 목표에 도달하는 조치를 취할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모든 수단을 통하여 공적·사적 기여를 확대시킬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하였다. 포르투갈의 입장은 가능한한 긍정적 행동에 의해 "전략"에 표명된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각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재정자원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의지를 구체화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즉 대다수 공여국이 받아들인 1% 목표에 사적부문(Private Sector)에 의한 재정이전이 포함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적부문에 의한 재정이전은 외국자본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태도와 기업의 개별적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제상황과 국제경제

환경에 따라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적부문에 의한 재정이전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적부문이 1% 목표실현에 많은 부분을 기여한다면 정부는 확정된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ODA 규모를 구체적으로 예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ODA 만의 목표실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은 감소된다. 왜냐하면 ODA 예산은 정부의 확고한 결정에서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 역시 뜻밖의 요인으로 인해 원조제공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정치환경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군사적 개입위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부가 공공지출을 줄이려는 조치, 경기후퇴로 인해 정부가 고용확대를 위한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계획, 공공지출 확대를 통해 국내혼란을 억제하려는 조치, 개도국측의 비우호적 행위 및 자원낭비에 대한 비난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요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제 2차 개발 10년에서 확정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선진공여국측의 ODA 규모증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실제 국제개발 전략에 표명된 목표의 실현연도로서 1975년을 주요 5개 선진공여국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국제개발전략이 채택될 당시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을 제외하고 모든 DAC 회원국은 자국의 원조프로그램에서 0.7% 목표의 실행에 대해 유보를 표명하였다.⁶⁾ 그렇지만 몇개 국가는 별도로 자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네덜란드는 1975년까지 ODA를 GNP의 1%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스웨덴은 1974~75년도에 똑같은 목표에 도달하겠다고 의도를 표명하였다. 노르웨이는 1975년에 GNP의 0.75% 목표에 도달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프랑스는 ODA를 GNP의 0.6~0.7%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독일은 구체적 기한의

6) 서독과 스위스는 그 당시 UN 회원국이 아니었으므로 공식적으로 "국제개발전략"의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서독은 UN 사무총장에 전달한 문서에서 0.7% 목표를 채택하였으며, 가능한 빨리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없이 0.7% 목표의 원칙을 받아 들였다. 다른 8개 회원국은 이 문제에 관해⁷⁾ 입장을 계속해서 유보하였다.

당시 DAC 회원국 전체 원조규모가 1975년 GNP의 0.7%에 도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예산증가는 1970년 수준에 비추어 1970년 기준에서 GNP가 매년 5.3% 증가된다는 가정하에서 약 160% 증가되어야 한다.

실제 국제개발전략의 ODA 규모목표와 실현시기를 받아들인 국가나 이에 상응하는 유사한 목표를 국내차원에서 수립한 국가로는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이 있는데 이러한 국가는 1970년부터 1975년까지 매년 상당한 규모로 원조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매년 13% 증가시켜야 하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2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1970년에 ODA가 DAC 회원국의 평균비율인 0.35%를 능가한 국가중 프랑스는 GNP의 0.6~0.7%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영국은 1970년에 0.37%였으나 1974~75년에 0.43%에 도달한다는 원조계획을 표명하였다.

1970년에 DAC 회원국 평균비율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중 오스트리아와 이태리는 개발원조정책을 재심사하였으며, ODA 규모증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였다. 스위스는 1975년에 GNP의 0.3%에 도달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원조예산을 매년 20% 증액시켜야 되는 것이다.

결국 국제개발전략이 규정한 1975년에 GNP 0.7%에 도달한 국가는 소수이고 대다수 국가는 이러한 목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1975년 스웨덴이 0.82%, 네덜란드가 0.75%로 전략의 목표를 능가하였으며, 노르웨이 0.66%, 프랑스 0.62%, 오스트레일리아 0.60%, 벨기에 0.59%, 덴마크 0.58%, 캐나다 0.55%, 뉴질랜드 0.52%로 전략의 목표에 근접하였다. 나머지 국가는 오스트리아가 0.17%, 핀란드 0.18%, 서독 0.40%,

7) 1971년 당시 DAC 회원국은 16개국이였다.

이태리 0.11%, 일본 0.23%, 스위스 0.19%, 영국 0.37%, 미국 0.26%로 전략의 목표에 비해 실망스러운 현상을 나타내었다.

198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제 3차 개발 10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은 늦어도 80년대 후반까지 GNP 0.7%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시한을 확정하였으며, 이 이후 1% 목표를 달성하도록 표명하였다. 그러나 UN 총회 Resolution 35/36 으로 채택된 이 전략은 채택당시 많은 국가들이 전략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많이 표명했으며, 여러가지 조항에 대해 공식적 거부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 결의는 Consensus에 의해 채택되었지만 실제로는 실패로 나타났으며, 다만 개발을 위해 각국이 취할 행동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전략에서 추구하고 있는 ODA의 목표에 대해서도 미국은 0.7%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프랑스는 궁극적인 1% 목표에 대해 자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1년 기준으로 ODA가 GNP 0.7%를 능가한 국가로는 핀란드(0.76%), 네덜란드(0.88%), 노르웨이(1.14%), 스웨덴(0.92%)가 있으며, 프랑스가 0.62%로 이에 근접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0.38%, 오스트리아 0.34%, 이태리 0.30%, 일본 0.32%, 뉴질랜드 0.25%, 포르투갈 0.30%, 스페인 0.23%, 스위스 0.36%, 영국 0.32%, 미국 0.20%로 1970년 국제개발전략이 목표로 제시한 0.7%에 대다수의 국가가 엄청난 차이로 미달되어 20년이 지나도 이러한 목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IV. 개발원조에 관한 국제기구 결의의 평가

국제사법법원(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규약 제 38조는 국제법의渊源으로서 주요渊源과 보조적渊源 두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첫번째는 주요渊源으로서 이것은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는 국제법 규칙인데 국제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을 들고 있다. 개발원조 분야에서 원조를 제공할 선진국의 의무는 국제조약으로서 UN 헌장 제 1조, 제 2조와 OECD협정 제 1조,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법규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에서는 원조제공에 대해 추상적 규정만을 담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하여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원조규모와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실제 원조의 구체적 실시문제 및 규모에 관한 규칙은 결국 국제기구의 결의 채택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의 결의는 국제기구가 내리는 결정인 것이다.

두번째는 국제법의 보조연원으로서 ICJ 규약 제38조는 판례와 학설을 들고 있다. 보조적 연원이란 의미는 용어를 엄격히 정의해 보면 법규칙의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하기 위한 단지 보조수단이라는 것이다. 결국 ICJ 규약 제 38조는 국제법의 연원으로서 국제기구의 결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국제기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이 설립되어 세계적 차원에서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의 주체로서 그 회원국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외에도 유럽공동체와 같이 초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활동도 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기구는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였으며, 각 국가는 자국이 가입한 수많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집단적·세계적·지역적 활동을 발전시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국제관계에서 내리는 결정은 실제 중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국제법의 연원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기구의 결정은 그 성격이 다양하고 거기에 따라 그 법적 효과 역시 똑같지 않다.⁸⁾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특정문제에 대해 심사를 하고 회원국가에 대해 권고를 발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회원국가에 대해 의무적 성격의 결정을

8) 국제기구의 결정은 결의(Resolution), 선언(Declaration), 결정(Decision), 규칙(Rule), 지침(Directive), 권고(Recommendation), 헌장(Charter), 결론(Conclusion)등의 명칭을 갖는다.

내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을 수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약을 적용할 수 있고, 국제기구 내부의 행정적 기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원국가가 설립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조약의 준수를 보전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국제기구 내부의 운영을 규율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권한이 실체에 있어 국제기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기구의 결정은 국제기구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국제기구의 행위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는 국제협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제법의 주체로서 국제기구가 발하는 일방적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일방적 행위는 회원국에 대해 강제적 성격을 가진 것과 강제적 성격은 없지만 도덕적·정치적 영향력을 나타내며, 국제법의 보조적 연원으로서 혹은 관습규칙 형성의 요소로서 기여하는 것이 있는데 UN 총회의 결의가 대부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는 선언이나 헌장이란 제목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강제적 성격을 가진 국제기구의 일방적 행위로는 설립조약을 수정하는 국제기구의 결정, UN 안보이사회의 결정, UN의 전문기구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내리는 결정, 국제기구의 내부운영 규칙을 정하는 결정 등이 있다.

실제 개발원조의 구체적 실시 및 규모에 관한 결의는 UN 총회, UNCTAD, OECD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결의는 선언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하는 표기를 가진 것도 있으며 강제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지만 도덕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의 형성과정 및 기능과 구체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9) 세계국제법협회는 제 13차 회의에서 규범적 성격을 가지는 UN 총회 결의를 두가지 범주 즉, a) 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속하는 기존의 법규칙을 확인하는 선언적 결의(결론 4), b) 법을 발전시키고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 형성에 이바지하는 결의(결론 5)로 분류하고 있다.

10) 세계국제법협회는 결론 12에서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다. 선언이라고 불리는 결의의 법적지위는 다른 결의와 다르지는 않다. 그렇지만 결의의 이러한 특별한 형태는 표명된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선언이란 어떤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거나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원칙을 표명하기 위해 적합하다.

1. 국제기구 결의의 형성과 기능

가. 국제기구 결의의 형성

국제개발을 위한 국제결의의 형성과정에는 크게 두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보편적 국제기구내에서 숫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개도국은 선진국의 견해를 무시하고 아무런 양보없이 그들의 주장을 채택하려고 한다. 둘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채택된 결의는 선진국이 결정적으로 반대를 하면 비록 결의로는 채택되었지만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양 진영의 의견이 강하게 충돌된 것도 있으며 양진영이 타협한 것도 있다.

1) 충돌된 결의

이러한 결의는 주로 개도국측의 입장이 많이 담겨 있으며 개도국은 이러한 결의에 만장일치를 표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표명하는 이런 결의는 국제개발에 관한 이념을 형성하며 장래의 경향을 지시하여 나중에 실정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1974년 UN 총회에서 결의로 채택된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헌장" 및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선언"은 선진국의 반대없이 채택되었지만 많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의 결의에 포함된다. 또한 선진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개도국간의 의사를 규합하는 국제회의인 비동맹회의에서 채택된 1973년 Algiers 선언도 이에 해당한다.

2) 타협의 결의

이러한 결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양진영의 성공적 타협에서 나온다. 1975년 UN 총회의 제 7차 특별회기에서 채택된 "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3362와 1981년 Paris에서 개최된 최빈국에 대한 UN회의가 채택한 "실제적 행동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양 진영의 반대없이 채택되도록 Consensus 제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Consensus 제도를 활용해서 선진국측의 반대표가 없다고 해서 선진국측이 완전한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있어 선진국측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망설이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게다가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는 Consensus로 채택되기 이전에 유보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타협방식은 개도국측으로서는 자신의 입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일반적 원칙에 대한 구체적 결과를 끌어낼 모든 경우에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채택된 결의가 재정적 문제에 관제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나. 국제기구 결의의 기능

국제개발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결의는 추상적 원칙 및 규칙을 표명하는 기능을 가진 결의와 구체적 행동의 기초를 이루고 정해진 원칙을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기능을 가진 결의가 있다.

1) 원칙을 표명하는 결의

이러한 결의는 개발의 이념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제개발 규칙을 형성하는데 있어 보조적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헌장이나 선언이란 이름으로 채택된다.

의무적 구속력이 없는 이러한 결의는 특정한 법적가치를 갖고 있다. 첫째, 어떤 국가가 이러한 결의를 채택한 국제기구의 회원이라는 사실에서 이 국가는 선의로 이러한 결의를 검토할 최소한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결의가 제기하는 원칙에 따르는 국가는 이 원칙에 위배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의의 의미는 국제개발에 관한 규칙에서 중요한 면을 나타낸다. 즉 이러한 결의에서 채택된 원칙은 과거 선진국들에 의해 형성된 국제관계 규칙과

가끔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개도국측의 주장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개발 이념과 양립되지 않는 기존의 경제관계 규칙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은 국제개발에 관해 의무적 성격을 가진 규칙을 새로이 제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결의 채택으로 과거의 규범을 최소한도 거부할 수는 있는 것이다.

2) 구체적 행동을 나타내는 결의 : 프로그램과 전략

이러한 결의는 프로그램이나 전략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개발을 위한 국제 행동을 증진할 목적을 갖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가가 취할 행동을 열거하고 있다. 프로그램이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주된 정책방향을 확정하는 결의이다. 전략은 특정분야에서 국가와 국제기구의 행동을 결합하는 대규모 행동계획인 캠페인 같은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훨씬 야심적인 종합적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1950년대 부터 UN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불평등한 개발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UN 총회는 1961년 UN의 제 1차 개발 10년을 선언하였으며 이 결의에서 UN 총회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많은 목표를 열거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과 UN 사무총장에게 모호한 권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은 프로그램이지 전략은 아닌 것이다.

1970년 UN 총회는 결의 2626를 채택하여 UN의 제 2차 개발 10년을 선언하였으며 1960년에 선언한 제 1차 개발 10년에 부응하는 국제개발전략을 정의하였다. 이 결의에서는 국가간의 행동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계적 차원에서 실시할 구체적 계획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행동프로그램"은 1970년 UN 총회 결의 2626에서 확정된 목표와 방식을 광범위 하게 다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전략을 이루고 있다.

2. 국제기구 결의의 가치

개발원조에 관한 UN 총회의 결의는 직접적으로 회원국들에게 의무적 힘을 가지는 법을 제정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규범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UNCTAD는 UN의 부수기관이지만 그 결의 역시 세계적인 개발전략의 형성에서 중요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조금씩은 관련되고 있다. 원조제공과 국제무역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저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UN 총회는 많은 결의를 채택하여 이에 긍정적으로 행동하였다.

또한 UN 총회와 UNCTAD는 개발원조에 관해 채택된 결의의 적용을 위한 평가체제를 만들어 왔다. 그리하여 결의의 이행은 그 자체에 의해서는 의무적이지 않지만 감시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리하여 심리적으로 구속함으로서 의무의 감정을 나타내게 하여왔다. 이러한 체제의 체계적 활용으로 개발을 위한 UN제도의 실질적 능력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감시체제는 결의의 심리적·정치적 가치를 강화시켜 결의가 현실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합화해 나아가도록 한다. 1970년 채택된 국제개발전략의 중간평가가 그러한 실례를 제공하며, 이 평가는 UN 총회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프로그램, 국가의 경제권리와 의무헌장에 표명된 원칙과 정책을 고려하여 국제개발 전략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체제가 국제기구에 의해 채택된 결의의 권고적 가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제기구의 결의를 보편적 입법으로서 고려하도록 주장하는 개도국측의 의사를 조금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UN 총회와 UNCTAD는 점차 각 국가에게 결의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각 국가가 국제기구로 부터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망설이는데 대해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UN 결의를 적용하고 이러한 목적에서 취해진 실제적 조치를 설명하려는 각국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자국의 원조활동이 국제기구가 제정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규제받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 선진국 중 대부분은 그 행동과 선언에서 살펴 보면 원조가 개도국을 위해 실시되어야 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성의 의무라고 인정하고 있다. 실제 선진국은 이러한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선진국은 이러한 의무가 법규칙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수원국의 독립과 이익을 존중하는 특별협정에 어느 정도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엄청난 다자원조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981년 9월 Paris에서 개최된 최빈국에 대한 UN 회의는 Consensus에 의해 "실제적인 새로운 행동프로그램"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197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5차 UNCTAD 회의가 채택한 최빈국에 대한 세계적 행동프로그램을 계승하고 있다. Paris에서 채택한 이 프로그램은 최빈국에 대한 원조규모에 대해 공여국측의 엄숙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외에 최빈국의 개발에 관한 많은 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빈국의 개발에 관한 최빈국의 의무와 타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이행을 조사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즉 조사를 위한 회의에 최빈국과 타국가는 개발을 위한 확정된 행동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원조혜택을 받기 위해 최빈국은 구조개혁을 약속해야 하며 조사회의시 공여국은 타국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행동계획표를 행동프로그램 규정에 일치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조사체제는 지속적인 압력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행동 프로그램은 Paris 회의와 UN 총회에서 Consensus에 의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강화된 Consensus이며 참여국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유보를 하지 않았으며 많은 국가가 이 프로그램을 찬성하는 일방적 약속을 하였다.

개발을 위한 활동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에 따르는 것이고 각 국가가 순수한 박애정신에 의하여 원조활동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주장이다. 그렇지만 국제기구의 결의에 의해 규정된 바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원조의 원칙과 방식을 수락하고 있으며 국가는 재정적 약속이 불충분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확정된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원조규모의 목표에 관해서는 여러 국제기구 결의가 규정한 목표에 대다수 국가가 실제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느정도 받아들인 것이며 많은 국가가 그 목표의 실현시기를 확정함으로서 구체적 실현의도를 표명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UN 총회 및 기타 국제기구 결의(UNCTAD, DAC, 피어슨보고서 등)의 직접적 결과인 것이다.

국제기구의 결의는 점차 프로그램, 행동프로그램, 전략 등의 이름이 붙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기구가 채택하는 결의에 실질적 내용을 부여하려는 의지인 것이다. 이러한 것이 경제문제에 관계될 때는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결의는 기존상황을 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적 행동을 향해 나아가려는 국제공동체의 바람직한 법질서 형성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것이 개발을 위해 국제적 행동을 장려하는 많은 결의가 계속적으로 채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V. 결 론

원조는 원래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실시되었다. 그러나 세계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UN은 조직구성을 보편화시켜 나가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기구가 되었으며 개도국의 개발에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연대성 개념을 표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에서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선진국의 원조의무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 개발원조 실시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규칙의 존재는 UN 헌장의 제 1조와 제 2조, OECD 협정의 제 1조와 제 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조약은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개도국에게 원조를 제공할 의무만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는 원조의 수혜자 및 원조규모와 조건에 대해 광범위한 자유 재량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원조규모와 조건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특별규칙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법률적 상황이 지난 수십년간 개도국이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려는 개도국측의 노력의 결실이 국제기구의 결의 채택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국제기구의 결의에서 해당되는 국제기구 회원국 모두에게 강제력이 부과되는 개발원조에 관한 국제입법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지만, 이에 반해

선진국은 국제기구의 결의 내용이 어떠한 의무도 구성하지 않는 단순한 염원과 정책 기술의 원칙이기를 원하며 따라서 UN 총회가 강제력이 없는 권고만을 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국제기구의 결의는 강제력이 결여된 국제기구의 일방적 행위인 것이며 강제력을 가지는 국제협정으로 발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권고의 성격을 가지는 이러한 결의의 내용을 국제기구의 회원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다.

원조의 규모에 대하여서는 GNP의 일정비율을 할당해야 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칙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1964년 제 1차 UNCTAD 회의는 국민소득 1%의 재정자원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1970년 UN 총회는 ODA가 GNP의 0.7%에 도달하도록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OECD 역시 유사한 권고를 하였다. 그뒤 UNCTAD, UN 총회 및 기타 국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결의를 계속적으로 채택하여 왔지만 이러한 결의에 많은 국가가 유보입장을 표명하거나 거부하였다. 특히 미국과 스위스는 OECD의 권고를 결코 받아 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들의 관행은 국제기구가 정한 원조규모에 관한 권고를 결코 일률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OECD의 DAC 회원국 관행 역시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ODA 제공 규모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GNP대비 일정 비율을 ODA로 제공하는 각 국가들의 실행이 자국의 자유재량권 행사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국제관습법 규칙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국가마다 일정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 관행이라는 실질적 요소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게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행위가 구속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UN의 제 3차 개발 10년에 관한 결의에서 표명된 바와 같이 1990년까지 ODA를 GNP의 1%까지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권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거의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현실을 고려해 볼때 개발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개발에 대한 권리에 근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개발에 대한 권리란 사람은 살아야 할 권리와 보다 잘 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개념이다. 원래 개발에 대한 권리의 논의는 국제관계에서 집단적 권리로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개발을 도와야 한다는 연대성의 원칙에서 발전되었다. 이러한 권리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구체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원조의 증액,特惠관세의 확대, 국제금융기구에의 참여권 확대를 통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요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1979년 UN 총회 결의 34/46과 1981년 12월 14일 UN 총회 결의 36/133을 통해 이러한 개발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국제적 관행에서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형성중에 있는 법적 권리인 것이며 실정 국제법적 권리로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발전이 필요하다. 즉 누가 이 권리를 가지며 누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어떤 내용의 권리인지 현재는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개도국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집단적 권리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이나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가는 현재 분명하지가 않다. 결국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원조를 제공할 의무의 근거는 모든 국제기구의 결의와 국제 문서에 비추어 보아 법적이라기 보다는 도덕적·정치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원조실시 및 그 규모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행한 과거 식민통치시대의 경제적 착취에 대한 보상의 개념에서 출발하였고 국제사회의 상호의존관계를 인식하고서 개도국의 개발에 선진국이 참여해야 하는 연대성의 의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선진국으로서 식민지를 경영한 역사도 없으며 현재 선진국의 지위에 도달한 입장도 아닌 상황에서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아국은 여러 국제 회의에서 개도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일정규모의 원조제공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원조를 제공할 책임은 없는 것이다.

또한 OECD 가입이 선진국의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자동적으로 부여받고 이에 따른 선진국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국이 OECD 가입시 산하위원회인 DAC에는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개발원조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DAC의 여러가지 권고나 지침에 지나치게 구애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후 DAC에도 가입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실제 DAC는 비록 OECD의 산하위원회이지만 독립적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DAC 가입문제는 DAC에서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며 일단 가입하게 되면 DAC는 원조공여국 간의 정책협의체를 하는 기관으로서 회원국에 대한 책임분담이라는 원칙에서 회원국에 대해 원조실시 방법 및 그 규모에 대해 정치적·도덕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가입은 아국의 향후 원조활동에 대해 DAC로 부터의 여러가지 규제를 감수해야 하며 원조규모 확대 및 원조의 질적개선 문제에 관해 현재까지 채택된 DAC의 많은 권고나 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DAC의 최근까지의 선례에 의해 DAC의 신규가입국의 경우 ODA 규모가 GNP의 0.2%에 도달해야 한다는 가입조건은 아국의 ODA가 1991년 GNP의 0.04%이며 OECD 가입이 예정되는 1996년에는 0.15%로 예상되는 상황에 비추어 보아 0.2%에 도달하기 위한 아국 ODA 예산의 더 이상의 추가적 증액은 정부에 상당한 부담사항이 되므로 DAC에의 가입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OECD 가입이 아국에 대한 여러가지 잇점을 고려해 볼때 DAC 가입없이 OECD 가입시에 OECD로 부터 아국의 ODA 규모를 확대시키도록 요청받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ODA 제공의 역사적 배경과 아국은 이와 다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아국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가하는 ODA 규모증대 문제를 완화시키는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의 유효성은 국제사회가 명분이나 도덕적 가치보다는 힘의 논리와 현실 지향적 조정에 의하여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 높지 않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 차원에서 선진국이 아닌 입장으로서는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선발개도국으로서 아국의 개발원조 실시는 개도국간 경제협력의 이념인 남남협력에 기초를 두어 후발개도국의 정치적·경제적 자립과 이들 국가와의 집단적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아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ODA 규모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I. 단행본 및 보고서

- 金泰俊 :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
- 外務部 : "OECD 概況", 1990
- 劉壬洙 : "OECD와 韓國經濟", EM 文庫, No.068, 1989
- COLLIARD, C.A. : "Institution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aloz, Paris, 1985
- COT Jean-Pierre ; PELLET Alain, etc. : "La Charte des Nations Unies,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Economica, Paris,
1985
- GARET Philippe : "L'OCDE", Thèse, Paris, 1966
- FEUER Guy; CASSAN Hervé : "Droit international du développement",
Daloz, Paris, 1985
- LUCHAIRE Francois : "L'aide aux pays sous-développés", Que sais-je,
No. 1127, P.U.F., Paris, 1977
- MERLOZ Georges : "La CNUCED, droit international et développement",
Bruylant, Bruxelles, 1980
- NGUYEN QUOC, D. ; DAILLER, P. ; PELLET, A : "Droit international
public", L.G.D.J., Paris, 1987
- OECD : "Development assistance efforts and policies", Paris, 1965,
1966, 1967, 1969, 1970, 1971
- OECD :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1972, 1976, 1979, 1980, 1989,
1992

- o OECD : "Twenty-five yea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1985
- o PEARSON Lester B. : "Partners in development : 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ager Publishers, London, 1969
- o PELLET Alain : "Le droit international du développement", Que sais-je, No.1731, P.U.F., Paris, 1987
- o STERN Brigitte : "Un nouvel ordre économique international, Recueil de textes et documents", Economica, Paris, 1983

II. 논문

- o BEKHECHI M.A. : Les resolutions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s normes en droit international, in FLORY Maurice(ed.), "La formation des normes en droit international du développement", Editions du CNRS, Paris, 1984, pp.181-196.
- o BERMEJO Romualdo : Reflexions sur l'aide au développement, "Revue Juridique et Politique, Indépendance et Coopération", 1986, No.1-2, pp.37-62.
- o BROUILLET, A. : La Conférence des Nations Unies sur les pays les moins avancés, "Annuaire Francais de Droit International", 1981, pp.587-627.
- o CARREAU Dominique : Chronique du droit international économique, "Annuaire Francais de Droit International", 1970, pp.633-704.
- o DE VISSCHER, P. : Valeur et autorité des actes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in R.J. DUPUY, "Manuel sur l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8, pp.316-332.

- o ECONOMIDES Constantin : Les actes institutionnels internationaux et les sources du droit international, "Annuaire Francais de Droit International ", 1988, pp.131-145.
- o FLORY Maurice : La Troisième décennie pour le développement, "Annuaire Francais de Droit International", 1980, pp.593-605.
- o GUILLAUME Gilbert : L'Organisation de Coopération et de Développement Economiques et l'évolution recente de ses moyens d'action, "Annuaire Francais de Droit International", 1979, pp.75-88.
- o GUNDLING Lothar : Economic and technical ai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North-Holland, Vol. 8, 1985, pp.147-149.
- o VIRALLY Michel : La deuxième décennie pour le développement, "Annuaire Francais de Droit International", 1970, pp.9-33.